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제9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”을 “제20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”을 “제20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·보관 및 보고 등)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·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 및 보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분석한 결과의 기록·보고 : 별지 제6호서식
2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의 기록·보고 : 별지 제7호서식
3.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고 : 별지 제5호의2서식
4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의 기록·보고 : 별지 제8호서식

별표를 별표 1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5호의2서식 중 “생년월일”을 “주민등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·보관해야 할 사항

구 분	기 록 시 기	보관기간
1. 취급자 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날짜, 수량 및 수출입처 나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, 수량 및 취득처 다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날짜, 수량 및 판매처 라.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날짜 및 수량 (측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치 가능) 마. 처리·처분 또는 재활용한 공정부산 물의 종류, 수량 및 처리일시 바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 항 및 날짜 사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수출입한 때마다 취득한 때마다 판매한 때마다 발생한 때마다 처리·처분 또는 재활 용한 때마다 조치한 때마다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5년
2. 등록제조업자 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날짜, 수량 및 취득처 나. 제조·수출입 또는 판매한 가공제품 의 종류, 모델명, 수량, 수출입 또는 판매 날짜 및 수출입처 또는 판매처 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사 항 및 날짜 라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 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취득한 때마다 제조·수출입 또는 판 매한 때마다 조치한 때마다 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

2.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

구 분	보 고 기 한
1. 취급자	
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나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및 판매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다. 공정부산물의 처리·처분 및 재활용 현황	해당 조치 후 1개월 이내
라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	매년 1월 31일까지
마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2. 등록제조업자	
가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나. 가공제품의 제조·수출입 및 판매 현황	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다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현황	매년 1월 31일까지
라.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·관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 결과를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
[별표 2] <신 설>

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·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(제8조의3제1항 관련)

1. 항공운송사업자가 기록·보관해야 할 사항과 기록시기 및 보관기간

기록·보관 사항	기록시기	보관기간
가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각 1개월간의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	매월 경과 후 3개월 이내	승무원이 75세가 된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일로부터 30년이 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
나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	조치한 때마다	
다.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을 한 때마다	
라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	실시한 때마다	

2. 항공운송사업자가 보고해야 할 사항과 보고기한

보고사항	보고기한
가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각 1개월간의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	매 분기 경과 후 3개월 이내
나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	매 분기 경과 후 3개월 이내
다.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	건강진단을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라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교육 결과	교육을 받은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

3. 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사항과 제출기한

제출사항	제출기한
1호에 따른 보관자료 일체	폐업 예정일 15일 전

건강진단서(제7조의2 관련)
[의료기관 작성용]

진단대상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건 강 진 단 결 과		
문진	■ 최근 특이증상	
	■ 방사선과 관련된 특이사항	
일반혈액 검사결과	백혈구(WBC)	/ μ L
	혈소판(PLT)	10^3 / μ L
	혈색소(Hb)	g/dL
관정조건		
채혈일		년 월 일

담당의사 의사면허번호/성명 :

연락처(전화) :

의료기관명(직인)

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별 피폭방사선량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록·
보고(제8조의3제2항제1호 관련)

(앞쪽)

1. 항공운송사업자명 :
2. 0000년 1분기 [] 2분기 [] 3분기 [] 4분기 []
3. 조사·분석 일시 : 0000년0월0일~0000년0월0일
4. 승무원 현황

구분	인원(명)
운항승무원	
객실승무원	
합계	

5. 국제항공노선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및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조사·분석결과

< 운항승무원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>

운항승무원 정보						운 항 기 중	출 발 공 공 항	도 착 공 공 항	탑 승 날 짜	피폭방사선량 (단위 : mSv)	조사 분석 방법
사번	주민 (외국인) 등록번호	성명	임신여부		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(단위 : mSv)						
			확인일	출산 (예정)일							

< 객실승무원 개인별 피폭방사선량 >

객실승무원 정보						출 발 공 공 항 항	도 착 공 공 항 항	탑승날짜	피폭방사선량 (단위 : mSv)	조사 분석 방법
사번	주민 (외국인) 등록번호	성명	임신여부		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(단위 : mSv)					
			확인일	출산 (예정)일						

년 월 일

작성 자 직위 : 성명 : (서명)
확인 자 직위 : 성명 : (서명)

(뒤쪽)

- 작성요령 -

1. 제5호의 사변 : 기관에서 부여한 승무원의 고유식별번호 기입
2. 제5호의 항공기종 : 운항승무원이 탑승한 국제항공노선의 항공기종을 기입
3. 제5호의 임신여부 : 사업자에게 보고·통보하여 임신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며, 임신이 확인된 경우 확인 일자 및 출산(예정)일을 함께 기입
4. 제5호의 연간 누적 피폭방사선량 : 승무원이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조사·분석 시점까지 누적하여 피폭한 방사선량을 기입
5. 제5호의 출발/도착공항 : IATA CODE 표기
6. 제5호의 탑승날짜 : 해당 국제항공노선을 탑승한 날짜를 기재
7. 제5호의 피폭방사선량 : 승무원의 해당 국제항공노선 탑승으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을 기입
8. 제5호의 조사·분석방법 : 우주방사선 측정기를 통한 조사·분석의 경우 측정장비명, 전산프로그램 램을 통한 조사·분석의 경우 전산 프로그램명 기입

[별지 제7호서식] <신 설>

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기록·보고(제8조의3제2항제2호 관련)

(앞쪽)

1. 항공운송사업자명 :
2. 0000년 1분기 [] 2분기 [] 3분기 [] 4분기 []
3.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편성 시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방법:
4. 조치사항

성명	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	날짜	내용	사유	피폭방사선량 (단위 : mSv)

5. 정보제공 실적

날짜	방법	대상 인원	제공 인원	형식(내용)	비고

년 월 일

작성 자 직위 : 성명 : (서명)

확인 자 직위 : 성명 : (서명)

(뒤쪽)

- 작성요령 -

1. 제3호의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편성 시 피폭방사선량을 고려한 방법: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편성 시 피폭방사선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하였는지 상세히 기재
2. 제4호의 날짜: 조치를 실시한 날짜를 연월일 순 8자리 숫자를 기입
3. 제4호의 내용: 국제항공노선 탑승 횟수 제한, 탑승 국제항공노선 변경, 국제·국내항공노선을 탑승하지 않는 근무로 변경 등 피폭방사선량 저감을 위해 실시한 조치사항과 기준 초과 경위 조사, 피폭방사선량 재평가, 경위 조사 및 재평가 결과의 승무원 통보 등 기준 초과시 수행한 조치사항을 기입
4. 제4호의 사유: 기준 초과 우려, 의사의 소견, 기준 초과 등 조치를 실시한 사유를 기입
5. 제4호의 피폭방사선량: 승무원의 조치일시 기준 피폭방사선량을 기입
6. 제5호의 날짜: 연월일 순 8자리 숫자 기재를 기입
7. 제5호의 방법: 정보제공을 수행한 방법을 기입
8. 제5호의 대상 인원: 정보제공 시점에 정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승무원의 수(명)를 기입
9. 제5호의 제공 인원: 정보제공 시점에 정보제공을 받은 승무원의 수(명)를 기입
10. 제5호의 형식(내용):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등 승무원이 제공받는 내용을 기입
11. 제5호의 비고: 승무원이 정보제공을 별도로 요청한 경우 해당 상세 내용을 기입

[별지 제8호서식] <신 설>

승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기록·보고(제8조의3제2항제4호 관련)

1. 항공운송사업자명 :
2. 0000년 1분기 [] 2분기 [] 3분기 [] 4분기 []
3. 교육 결과

구분	성명	주민(외국인) 등록번호	교육기관	교육일자	수료번호	비고

- 작성요령 -

1. 제3호의 구분: 신규 또는 정기 교육을 구분하여 기입
2. 제3호의 교육일자: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 수료증 하단에 표기되어있는 일자를 기입
3. 제3호의 수료번호: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 수료증 상단에 표기되어있는 수료번호를 기입

년 월 일

작성 자 직위 : 성명 : (서명)

확인 자 직위 : 성명 : (서명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기록·보관 및 보고의 기준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·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<u>별표와 같다</u> .	제6조(기록·보관 및 보고의 기준) ----- ----- ----- -- <u>별표 1과</u> ----- -----.
제7조의2(건강진단)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“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말한다. 1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4항 각 호 외의 <u>부분 본문</u> 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(영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) 2.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<u>부분 본문</u> 에 따른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(영 제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) ② (생략)	제7조의2(건강진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 <u>제20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 -- <u>제202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8조의3(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·보관 및 보고 등)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·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<u>별표 2와 같다</u> .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 및 보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. 1.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분석한 결과의 기록·보고 : 별지 제6호서식 2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의 기록·보고 : 별지 제7호서식 3.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·보고 : 별지 제5호의2서식 4.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의 기록·보고 : 별지 제8호서식